



##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수신 소방청장(화재대응조사과장)

(경유)

제목 “의용소방대의 날” 기념행사에 관한 질의회신

---

1. 우리 위원회에 2022. 1. 13.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
2. 문 ‘가, 다, 라’ 에 대하여

### [소방청]

귀문의 경우 소방청이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(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)에 근거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국회의원 등을 초청하여 참석한 내빈에게 기념품,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「공직선거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함.) 상 가능할 것입니다.

### [지방자치단체(시·도소방본부 및 소방서)]

귀문의 경우 소방청이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(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)에 의하여 수립한 기념행사 기본계획 및 그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(시·도소방본부 및 소방서)가 그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국회의원 등을 초청하여 참석한 내빈에게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기념품,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상 가능할 것입니다. 다만, 소방청의 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,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.

3. 문 ‘나’ 에 대하여

귀문의 경우 의용소방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